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6. 21.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2년 6월 8일
-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22년 6월 16일
- 라. 상정일자: 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2. 6.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 가. 제안이유
 - 근거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 및 관련 용어 정비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단
체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제명 변
경
 -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 및 관련 용어 전반적인 정비
 - 자치단체 조례 위임 사항 규정(안 제5조)
 -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원배)

○ 본 조례안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 및 관련 용어 정비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은

- 제명 및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9조에서는 이 조례의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조례의 적용 대상을 “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하고, 이를 조례의 제명과 관련 조문에 반영하였고,
-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상위법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고,
- 안 제5조제5항에서는 상위법에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공용차량 구입이나 임차 시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본 조례안은

- 조례의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제명을 변경하고 동시에 조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또한, 최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차,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충전인프라 확충 등을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490 호
----------	---------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근거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 및 관련 용어 정비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 나.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 및 관련 용어 전반적인 정비
- 다. 자치단체 조례 위임 사항 규정(안 제5조)
- 라.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3)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대상제외

라. 입법예고(2022. 5. 6. ~ 5. 26.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전기자동차”란”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란”으로, “제2조제3호”를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중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을”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로, “관하여는”을 “관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기자동차”를 각각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

적 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민”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경비의 지원)”을“(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충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 . . 구 . . . 라 한다)”를 “구청장이 운영(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로, “충전인프라”를 “충전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전용주차구역”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우선구입)”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 비율과 예외 규정을 따르되 필요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구의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 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중전의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기자동차의 보급확대”를 각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위해 구민들에게 홍보물품 배포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중전의 제9조) 중 “제6조 및 제8조”를 “제6조,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u>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전기자동차</u>”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p> <p>2. “<u>충전인프라</u>”란 <u>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u></p> <p>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u>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을</u></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 ----- ----- <u>환경친화적 자동차</u> ----- ----- <u>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u>-----.</p> <p>제2조(정의) ----- ----- ----- ----- <u>제2조제2호</u>----- -----.</p> <p>2. “<u>충전시설</u>”이란 <u>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u></p> <p>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u></p>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 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
----- 관하여 -----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

----- 환경친화적
자동차-----

-----.

② -----

-----.

1. 환경친화적 자동차 -----
--
 2. 환경친화적 자동차 -----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

 5. ----- 환경친화적 자동차-----

- ③ -----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충전기 관련 KS 규격이나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인프라 구축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기자동차 보급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신 설>

<신 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제5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과 이용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 구 . . 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 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
-- 환경친화적 자동차-----

-----.

1. 구청장이 운영(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

3. 구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
관의 부설주차장 내에 전기자
동차 주차구획 설치

4. (생략)

제7조(우선구입) 구청장은 법 제1
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
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
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구”라 한다) 소유 -----

----- 충전시설 -----

3. -----

----- 전용주차구역 -----

4. (현행과 같음)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율 적용) ① 구청장은 공용차
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
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
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
한 구매 비율과 예외 규정을 따
르되 필요시 강화된 비율을 마
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의 출자·출연기
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 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제8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전기 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준용)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생 략)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 ① -----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

②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활동을 위해 구민들에게 홍보물품 배포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 제6조, 제8조 및 제9조-----

--.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